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덕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064 발의연월일: 2024. 10. 30.

발 의 자: 박덕흠 · 안철수 · 강대식

김소희 • 이헌승 • 박정하

이양수 · 김성원 · 나경원

서천호 · 최은석 · 박정훈

김민전 의원(13인)

제안이유

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이 '23년부터 지방이양됨에 따라 공·사립 자연휴양림의 지정·해제 및 원상복구 명령권한 등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또한 자연휴양림, 숲길 등 사업을 실행하기 전 타당성 평가를 관련기관·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나, 타당성 평가를 실행한 기관·단체에서 해당 사업(설계·시행·감리)을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공정성 문제 제기의 우려가 있음.

이에 공정한 사업추진을 위해 법률에 타당성 평가에 참여한 기관· 단체의 해당 사업 참여에 제한을 두어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자연휴양림 지정·해제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(안 제13조, 제1 9조)
 - o 자연휴양림 지정권한은 국·공·사 구분없이 산림청장에게 있었으나 산림 소유권한 또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 대부등의 비중에 따라 지정권한을 구분하여 운영

<지정권자>

- * 시 도지사 : 공 시립, 지정신청 면적의 50% 미만이 산림청 소관 국유림를 포함하는 경우
- * 산림청장 : 국립, 지정신청 면적의 50% 이상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포함하는 공·사립자연휴양림
- o 자연휴양림 해제권한을 지정권자(산림청장 또는 시·도지사)가 할 수 있도록 권한 조정
- 나. 자연휴양림,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취소에 따른 원상복구 명 령권자를 시·도지사에게 위임(안 제16조, 제21조)
 - o 자연휴양림, 산림욕장등 조성계획의 승인 및 취소권자가 시·도지 사이기에 승인취소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권한도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자율권과 책임성을 함께 부여
- 다. 자연휴양림등, 숲길 조성 시 타당성 평가를 한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사업의 설계·시행·감리 참여 제한(안 제21조의2, 제23조)
 - * 자연휴양림등 : 자연휴양림, 산림욕장, 치유의 숲, 숲속야영장, 산림레포츠시설

법률 제 호

산림문화 • 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산림문화 • 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 전단 중 "산림청장은"을 "시·도지사는"으로, "포함한다)"를 "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"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지정신청 면적 중 2분의 1 이상이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은 산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지정한다.

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 ·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지정하려면 미리 산림 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13조제4항(종전의 제3항) 전단 중 "산림청장은"을 "산림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"를 "산림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"로 하며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시·도지사는 산림청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6조제3항 중 "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"를 "시· 도지사"로, "명하거나 제14조제6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"을 "명할"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제6항에 따라보조 또는 융자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.

제16조제4항 전단 중 "산림청장은"을 "시·도지사는"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산림청장은"을 "산림청장 또는 시· 도지사는"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시·도지사는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 구역의 10분 1 이상을 변경하려면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제19조제2항 중 "산림청장은"을 "산림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시·도지사는 산림청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.

제21조제3항 중 "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" 를 "시·도지사"로, "명하거나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"을 "명할" 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7항에 따라보조 또는 융자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.

제21조제4항 전단 중 "산림청장은"을 "시·도지사는"으로 한다.

제21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사업에 대한 설계·시행 감리에 참여할 수 없다.

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및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2항"을 각각 "제3항"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사업에 대한 설계·시행 감리에 참여할 수 없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타당성 평가에 관한 적용례) 제21조의2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타당성 평가는 이 법 시행 후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.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"중앙행정기관의 장은"을 "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는"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혂 개 정 아 행 제13조(자연휴양림의 지정) ① (생 제13조(자연휴양림의 지정) ① (현 략) 행과 같음) ② <u>시 · 도지사는</u> -----② 산림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 림의 소유자(사용・수익할 수 있 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장 및 제32조에서 같다) 또는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(이하 "대부 등"이라 한다)를 받은 자(받으려 는 자를 포함한다)의 지정 신청에 따라 그가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 등을 받은 산림(받으려는 산림을 ---- 포함하다. 포함한다)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 이하 이 조에서 같다)----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정 신청의 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 <단서 신설> -. 다만, 지정신청 면적 중 2분의 1 이상이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지정한다. <신 설> ③ 시・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자 연휴양림을 지정하려면 미리 산림 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③ 산림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④ 산림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-따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려는

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자연휴 양림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내의 토지를 자연휴양림에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정된 토지는 「산림자원의 조성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산림으로 본다.

④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자연휴양림의 명칭・위치・지번・지목・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

⑤ (생략)

제16조(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등) ①·② (생 략)

③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산림의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제14조제6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. <후단 신

·.
⑤산림청장 또는 시・도지사는 제
1항부터 제4항까지
<u>이 경우 시·도지사는</u>
산림청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.
<u>⑥</u> (현행 제5항과 같음)
]16조(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
취소 등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③시·도지사는
명할
이 경우 산림청

설>

①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산림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행정대집행법」을 준용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「산지관리법」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로 충당할 수 있다.

제19조(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등)
①산림청장은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지정된 구역의 일부를 변경할 수있다. <후단 신설>

1. ~ 3. (생략)

②<u>산림청장은</u> 제1항에 따라 자연 휴양림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

<u>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</u>
4조제6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
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
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.
④ <u>시 · 도지사</u>
<u>.</u>
제19조(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등)
세19조(시신규장답니 시장에게 3/
1) <u>산림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</u> -
① <u>산림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</u> -
① <u>산림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</u> -
① <u>산림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</u> -
① 산림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
① 산림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자연 휴양림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 구역의 10분 1 이상을 변경하려면
① 산림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
① 산림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자연 휴양림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 구역의 10분 1 이상을 변경하려면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한 다.

된 구역의 일부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산림소유자 또는 대부등을 받은 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게 통보하고 자연휴양림의 명칭·위치·지번·지목·면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

제21조(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 저 취소 등) ①·② (생 략)

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산림의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수 있다. <후단 신설>

④산림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행정대집행법」을 준용하여

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에
게도 통보하여야 한다.
제21조(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
취소 등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③ <u>시·도지사</u>
<u>명할</u>
이 경우 산림청장 또는 지방
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7항에
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비용이 있
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
회수할 수 있다.
④ <u>시·도지사는</u>

대집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「산지관리법」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로 충당할 수 있다.

제21조의2(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정명가) ①·② (생략) <신 설>

③ • ④ (생 략)

제23조(숲길의 조성 등) ① (생 략) 7

<신 설>

- ② (생 략)
- ③ 제2항에 따라 숲길의 노선이 지정·고시되면 「산지관리법」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거나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제21조의2(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
평가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2항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
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
사업에 대한 설계ㆍ시행 감리에
참여할 수 없다.
<u>④</u> ・ <u>⑤</u> (현행 제3항 및 제4항과
같음)
제23조(숲길의 조성 등) ① (현행과
같음)
② 제1항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
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
<u>사업에 대한 설계·시행 감리에</u>
참여할 수 없다.
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<u>④</u> 제3항

<u>④</u> 제1항 및 <u>제2항</u> 에 따른 숲길조	_
성계획의 수립, 타당성 평가의 절	<u> </u>
차, 숲길 명칭의 부여, 숲길 노선	1
의 지정・변경・지정해제 및 그	L
고시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]
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	

<u>(5)</u> <u>제3항</u>	